

<p>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시보에 공고토록 하여 널리 알려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자 함. 공고규정은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음.</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p> <p>별표 제2호 분야별 수수료의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중 “마. 석유판매업 등록(1종)”을 “마. 석유판매업 등록(2종)”으로 하고, 마목의 “(1)일반대리점·용체대리점”란 다음에 “(2)부생연료유판매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수수료 징수대상사무</th><th style="width: 15%;">단위</th><th style="width: 25%;">금액</th><th style="width: 35%;">근거법령</th></tr> </thead> <tbody> <tr> <td>(2) 부생연료유판매소</td><td>1건</td><td>20,000원</td><td>석유사업법 제31조</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84조의 2의 규정</p>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근거법령	(2)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석유사업법 제31조	<p>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제3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⑪제3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근거법령						
(2)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석유사업법 제31조						